

수원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888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8887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190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김민성, 강태윤, 오동훈

변론종결 2022. 4. 29.

판결선고 2022. 6. 1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190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11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안희경, 판사 석윤민

[별지]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아파트 M동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스라브 지붕 20층 아파트

1층 481.42㎡

2층 467.34㎡

3층 467.34㎡

4층 467.34㎡

5층 456㎡

6층 456㎡

7층 456㎡

8층 456㎡

9층 456㎡

10층 456㎡

11층 456㎡

12층 456㎡

13층 456㎡

14층 456㎡

15층 456㎡

16층 456㎡

17층 456㎡

18층 456㎡

19층 456㎡

20층 456㎡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N

구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적 : 59.9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K 34904.9㎡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34904.9분의 34.19. 끝.

